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의 전자산업

조 사 부

1. 세계무역기구(WTO)의 태동과 의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실패와 현 GATT체제가 당초 잠정적으로 채택되고 많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국제 협정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행 GATT체제는 경제 강대국의 불공정 및 자의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부적절했다.

따라서 GATT체제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자간 무역기구(MTO)화시키는 작업을 UR협상의 교섭 과정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비공식회의에서 MTO 설립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며, '93년 12월 타협안이 확정되기에 이른다. 즉 미·EC간 협의를 통해 법인격을 갖는 상설기구로 MTO를 설립하되, 국내법의 MTO 규정 일치의무 약화 및 의사 결정 시 현행 GATT의 만장일치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타협안이 채택된 것이다.

UR 협상 타결 최종 TNC 회의에서 MTO를 WTO로 수정하자는 제안을 제시한 바, 미국 제안대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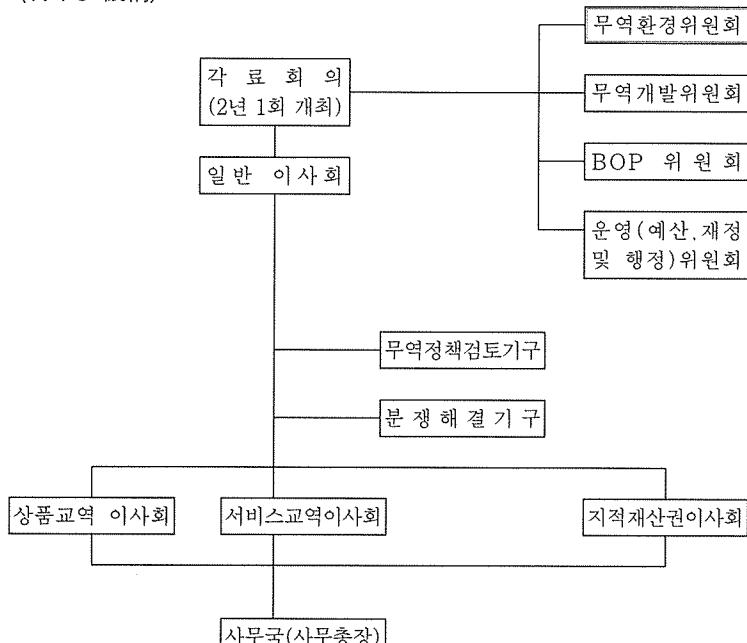
이렇게 해서 1947년 10월 제정 세계 교역을 47년간 유지해 왔던 GATT 시대가 막을 내리고 '9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간 교역 질서를 강력히 규제할 WTO 체제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을 대신해 세계무역질서를

관장하게 될 기구(WTO)는 보호주의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주로 공산품의 관세장벽 철폐에 주력해 왔던 GATT와는 달리 서비스분야와 지적재산권 등 보다 폭넓은 규율범위와 강력한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GATT와는 구별된다.

WTO는 상품교역부문 이외에도 GATT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금융

〈WTO 機構〉



* 무역환경위원회 설립여부는 추후 결정

등 서비스부문과 지재권 부문도 규율하며 다자간협정(MTA)을 가동하고 있는 섬유도 규범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WTO는 이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설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 아래에 상품교역이사회(GATT+MTA)뿐 아니라 서비스교역이사회(GATS)와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를 두고 있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 오염문제를 무역문제와 연계해 다루기 위한 무역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WTO는 최고 의결기구로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두고 그 아래에 상설 의사결정 기구인 일반이사회가 있으며 분쟁해결기구(DSB),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등 별도 기구가 설치돼 있다.

일반이사회에 아래에는 상품교역 이사회 등 3개 이사회와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행정 업무를 맡을 WTO 사무국은 기존 GATT 사무국을 승계하게 된다.

WTO 의사결정은 회원국이 모두 1표의 권한을 행사, 합의나 다수결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가운데 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결정은 회원국 4분의 3이 동의해야 하도록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WTO는 “UR 최종 협정의 이행 기구”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 GATT 체제가 가지고 있던것 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이다.

WTO 체제는 GATT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함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제도·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WTO 체제는 결국 세계 경제가 하나의 규범과, 하나의 기구로 통일되어 한 지붕 경제권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의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2. WTO 협정 내용

최종협상결과

WTO 협정은 전문과 함께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로서 17개의 다자간 무역협정 및 4개의 수자간 무역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3개의 각료 결정 및 선언이 있다.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부여받았다.

즉,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WTO가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WTO 협정은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동경 MTN협정, 새로운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	제 15 장	제 16 장
○ 명칭	• WTO(세계무역기구)														
○ 전문에 환경관련 내용포함	• 환경관련조항 추가														
○ 각료회의 산하에 무역환경 위원회 설치여부	• 무역환경위원회 설립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함														
○ 의사결정방법	• 현행 GATT consensus 원칙계속 유지, 동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다수결														
- 웨비버 결정방법	• 회원국의 3/4 다수결														
- EC 투표권	• EC는 WTO 가맹국수만큼 투표권을 가짐														
○ 협정개정의 제안 및 발효 정족수	• 개정안 채택은 컨센서스에 의함. 불가시 2/3 다수결														
	• 핵심조항(의사결정 방법, MFN원칙, GATT 2 조의 양허표)은 3/4다수결														
○ 가 입	• 회원국의 2/3 다수결 결정														
○ 협정부적용	• 복수국간 협정을 제외하고 협정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를 회원국간 부적용														
○ 국내법의 WTO 일치	• GATT 1947체약국이던 회원국은 당초 계약국 간 부적용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한정														
○ 조부 조항	• 회원국은 국내 법규를 동협정에 일치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														
	• 1947년 GATT 회원국으로 가입 이전에 국내법에 의한 조치는 GATT '94 부적용(단, 동조치는 미국의 Jones Act에 대해 적용하되 5년간 적용)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관련기구, 무역정책 검토제도, 수자간 무역 협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WTO가 국제무역에 관한 UN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은 회원국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조정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국의 협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립하여 각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명확히 검토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이와 같은 무역정책 검토제도는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과 관련제도 및 관행 전반에 대한 명료성과 일관성 증진을 유도함으로써 세

계 교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두고 있다.

이에 따라 TPRB는 장기적으로 세계 교역 환경을 보호무역의 추세로부터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분쟁해결기구(DSB)는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과거 GATT에서는 명확한 관련조항이 없이 관련절차가 여러 조항에 걸쳐 분산되어 있었으나 UR 협정에서는 분쟁해결 절차 및 능력을 대폭 확충·강화하는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분쟁해결 관련 규정에 의하면 미국의 통상법 슈퍼 301조와 같은 한 국가의 일방

적 조치는 WTO의 출범과 함께 크게 억제될 것이다.

WTO 체제에서는 어느 회원국이 협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과거 GATT는 상품만을 관할하고 있어 보복조치를 상품만으로 한정되어 보복의 실효성이 한계가 있었으나 WTO 체제에서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서로 다른 분야로의 교역 보복을 허용함으로서 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크게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보복조치를 강화한 만큼 이의 남용도 방지하고 있다. 즉 어느 회원국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당하였다는 일방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판단은 반드시 WTO의 분쟁해결 기구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WTO는 기본적으로는 만장일치에 따른 합의제를 추구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다수결 표결 방식을 채택하도록 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시한도 설정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WTO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WTO의 결정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당해사항이 다자체제에 위협을 주는 등 WTO에 중요한 경우에는 3/4 이상의 동의로 수락시한을 설정한 다음 시한내에 이를 수락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WTO를 탈퇴토록 하는 강력한 의사결정체제로 국제무역의 UN으로

최종협상결과

구 분	최종협상결과
○ 적용범위	• WTO 설립협정 및 분쟁해결 절차협정 자체에도 적용
-WTO협정문이 분쟁해결절차 협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시행	• 복수국간 협정의 당사자가 결정
-복수국간 협정(민간항공, 정부 조달, 낙농, 우육협정)에 분쟁 해결절차 양해 적용여부	
○ 개도국 우대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	• 선진국을 상대로 개도국이 제소할 경우 협의, 중재, 패널설치, 패널절차와 관련하여 66개도국 분쟁해결 절차를 원용할 권리를 가짐
* 66개도국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결정 : 개도국의 경우 협의 및 패널 설치가 용이하도록 GATT 사무총장 관여	• 단, 패널이 시한내 보고서 제출이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제소국(개도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
○ 부속서 4(복수국간 협정) 협정의 별도입지 부여 여부	• 복수국간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양해 적용여부는 개별협정의 계약국간의 결정에 따름(부록 1로 규정)
○ 보조금, 반덤핑, 기술장벽, 관세평가, 농산물, 섬유, 서비스협정의 특별원칙 및 절차적용 여부	• 각 협정별 특별 원칙 및 절차는 당해 협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특별규정 적용(부록 2로 규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TO 체제의 안정된 출발을 위해 WTO 협정은 동협정의 일부를 유보하거나 혹은 조건부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를 경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WTO 협정의 수락이나 WTO 회원국으로의 가입여부는 일괄채택(Single Undertaking) – 즉, 전부 또는 전무–원칙을 따라야 한다.

일괄수락 원칙은 최종 의정서의 제4항(“accepted as a whole”)과 WTO 설립협정 제16조 5항(“No reservations”)에 잘 나타나 있으며, 특히 1986년 9월의 푼타델에스테 각료 선언에 더욱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WTO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비율 동의안은 전체를 단일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게 됨으로서 회원국들의 비준에 따라 안정된 WTO 출범을 도모한다.

과거 GATT 출범시 용인되었던 조부조항(Grandfathering)이 금번 WTO 출범에서는 배제됨으로써 WTO 회원국들이 모두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WTO 출발에 따른 조부조항의 폐지는 WTO 1947이 GATT 1944로 흡수되면서 GATT 출범당시의 조부조항인 「GATT 잠정적용 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GATT)」가 제외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조부조항 철폐의 단 하나의 예외로서 미국의 연안해운과 관련된 1920년 Jones법안의 일부를 5년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GATT

1994, Paragraph 3).

WTO 협정 제16조 4항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 법규를 WTO 협정에 합치(Conformity) 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합치의무 조항이 WTO 협정의 본문 규정이므로 비록 GATT 1994나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MFA)과 상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꼭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협정에 대한 국내 법규의 합치의무는 WTO의 안정되고 공정한 출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3. 전자정보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전자정보산업

UR 협정 후 전자산업에 미치는 주요한 부분은 반덤핑 등 비관세 장벽의 완화조치와 관세인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수출위주의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국내 전자산업은 종래 미국,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DRAM 반도체, 주요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덤프 제소, 수출자율규제 등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수출에 타격을 받아 왔다.

그러나 UR 협상 타결로 선진국의 반덤핑 및 Safeguard 등 수입 규제조치가 엄격하게 규정됨으로써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수출여건은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이던 대미 CTV, CPT 등이 Sunset Clause 조항에 의해 반덤핑 관세 부과 종결이 기대됨이 한 예이다.

관세분야에 있어서도 주요 수출 대상국의 관세 인하로 무역수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자분야 UR 관세 협상의 결과 전반적인 수출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개도국의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가전제품과 EU의 고율 관세가 폐지(인하)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등이 주요 수출 증가품목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반면에 우리나라의 관세인하(또는 무세화)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은 컴퓨터주변기기 등 국내 산업이 취약한 레이저 프린터, FDD 등이나, 이들 품목은 수입규모가 적어서 수입선 다변화에 조기 해제되지 않는 한 수입위증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라 대상품목을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완제품 업체에는 오히려 원가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우리나라는 물론 우리의 경쟁국가들도 같이 부딪치는 현실이므로, 결국 POST-UR시대에 전자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의 확보·유지가 관건이다.

나. 컴퓨터 및 정보산업

먼저 유리한 점에서는 외국기업의 진출로 인해 기술개발 추진 및 서비스 제공폭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선진 통신서비스의 제공 및 경쟁촉진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미·EC 등 선진국의 무세화, 개도국의 관세 인하로 수출이 증가될 것이며 개도국의 수입제한조치 완화로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덤핑제소 요건, 차격 강화 등을

UR 타결이 전자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주요 내용	시장별 환경변화예상	수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종합
관세	-관세인하 -일부 품목 무세화 추진	-선진국의 경우 관세인하폭은 크지 않을 듯 ○미국·EC·일본: 현행 관세율이 대부분 4~5% 내외 -전자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ASEAN, 중남미 등의 관세인하폭을 전망 ○현행 관세율 20~50% 수준	-선진국제품과 GSP수혜를 받고 있는 후발개발도상국의 제품에 대해 경쟁력 향상 -ASEAN,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 확대 전망 -무세화가 실현된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출증가가 클 전망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요건의 업격화 및 자의적 운용금지 ○제조자격의 제한 ○덤핑마진산정시, 동일기준 가격비교 원가이하 판매인정 구성가격 작성산정 ○소멸시효 설정 -수출자율규제 철폐 -상계관세, 긴급수입 제한조치 적용요건 엄격화	-그동한 반덤핑조치를 수입 규제수단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해 온 EC·미국·호주 등의 수출환경이 개선될 것임 ○한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반덤핑규제 현황(1993년 말) • 규제 중: 미국 4, EC 7건 • 조사 중: EC 3건, 호주 1건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근들어 거의 미사용	-한국의 대선진국(미국·EC·호주 등) 수출환경개선 -또한 일본 및 수출개발도상국인 대만·홍콩·중국·아세안 등도 혜택을 받을 것임	○○
기술장벽	-기술장벽 제거 ○기술기준 설정과 정공개 및 외국의 사전적 참여확대 ○인증절차의 간소화 ○기준의 투명성 제고 -기술기준의 국제적 통일화 도모	-그동안 기술장벽을 많이 활용해 온 선진국에의 진출환경 개선 ○시간, 비용의 감소 ○정보의 조기입수에 의한 사전적 대응 가능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저위에 있는 한국의 수출 확대 효과 기대 ○정보의 조기입수에 대한 사전적 대응 ○선진국 규격획득 용이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많은 혜택 예상	○
정부조달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대상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투자기관 포함 ○전자제품은 대상 물품에 포함	-협정가입국 정부조달시장에 참여 가능	-한국의 경우 통신기기 및 컴퓨터주변기기 수출 증가 전망 -조달시장참여는 국가간 통상 협력차원에서 이루어져 한국의 선진국시장 참여는 제한적 일 전망	○
원산지규정	-규정의 명료성, 예측 가능성, 통일성 제고 -지의적 운용억제	-수입장벽으로 활용해 온 EC 및 미국으로의 수출 및 현지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	-미국·EC 등으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증가 전망	○
무역관련투자조치	-다음 조치 철폐 ○국산부품구매의무 (local content) ○판매시장의 지정 ○특정제품 국내제조 ○외환통제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철폐 -전자산업을 수입대체, 수출전략산업화하고자 다양한 투자장벽조치를 취하고 있는 ASEN,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투자환경 큰 폭 개선	-한국의 개발도상국시장을 겨냥한 투자확대 전망 -일본은 현지부품조달체계를 상당히 갖추고 있어 한국이 더 유리	○

통한 선진국의 덤픽조치 남용 제한으로 우리의 수출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드는 컴퓨터의 경우 덤픽판정 가능성이 완화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특정 산업지원 보조금의 감소로 국내 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며 상계 관세조치 발동 요건의 강화 등으로 선진국의 상계조치 남용 제한이 가능하다.

불리한 점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인해 국내기업 및 금융권의 전산망 독점현상 등이 우려되며 외국업체들의 국내 부가통신(VAN) 시장 잠식 가속화가 우려된다. 부가통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50%까지 허용된 '89년 이후 삼성 데 이 타 시스템(IBM), STM(EDS), 금성정보통신(AT&T) 등 합작형식으로 외국업체들이 국내 VAN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컴퓨터 주변기기가 10년간 무세화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국내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의 보호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며 단순조립을 통한 우회덤핑 조항 신설로 해외투자 활동에 대한 저해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단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애로가 예상되는데 공기반자금, 공발기금 등이 기초생산 기술보조금이 아닌 응용 연구보조금으로 인정될 경우 산업정책 수행에 큰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보호강화로 기술료 상승 및 기술이전 기피시 대응 곤란이 예상된다.

구분	주요 내용	시장별 환경변화예상	수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종합
지적 재산 권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컴퓨터프로그램 사 후 50년까지 보호 ○특허권: 20년간 보 호 제법 특허 인정. 선출원주의로 통일 ○IC 배치설계권 15 년간 보호산업 ○디자인: 10년간 -내외국인 무차별적용	-제도변경 기대(통일화) ○미국: 발명주의→선출원주 의로 전환 예정 ○EBC: 생명공학분야 특허보 호범위 확대 기대 ○지적재산권 보유는 일본· 미국·EC 등 선진국에 집 중되어 있어 이들의 기술유 출 억제 로열티 인상, 지적 재산권 침해시 제재 강화 전망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국가는 절대적 기술우위에 이는 일 본·미국·EC 등 선진국임 -한국은 불리한 전망 ○로열티의 상승 ○첨단기술 습득의 곤란 ○위조상품 제재강화에 따른 수출 위축	×

주: ○○ 매우 유리, ○ 유리, △ 다소 유리, - 중립, ▽ 다소 불리, × 불리, ×× 매우 불리

따라서 주요 교역국가의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되고, 무역관련제도 절차가 명료하고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되어 우리의 수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첨단산업 기술개발자금지원 애로로 인해 컴퓨터 및 정보산업의 보호육성에 제약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전자산업은 수출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여 미·EU 등 선진국의 무세화, 개도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활용하여 시장별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기술개발 노력을 배가하여 컴퓨터 및 정보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의 초기추진과 지원강화로 컴퓨터 및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별 지원제도의 점진적 개편으로 공기반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를 WTO 체제가 허용하는 보조금 지급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컴퓨터 주변기기 산업 육성(관세인하 관련)을 통해 핵심 부품의 조기국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즉 레이저 프린터용 LSU 등 현재 Electro-21 과제로 개발 추진 중인 품목은 조기국산화가 되어야 하며 잉크제트, 프린터헤드, 메모리카드 등은 '94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대상과제로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통한 수입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무세화 품목중 다변화 품목(레이저프린터, FDD 등)은 현재 수입규모가 미미하나 국산 산업의 경쟁력회복 상황과 연계하여 다변화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입증가에 사전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반도체

반도체산업에서 유리한 점은 반도체 수출관세가 무세화되면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EU지역으로의 수출확대가 가능(EU지역 기준관세율: 14%)할 것이며, 반도체 장비관세가 무세화되면 반도체 제조업체의 장비구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7% → 0% 시 비용절감: 년 1,300억원)

또한 반도체 소자 수입시에도 관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93년 순수 수입 규모: 21억불)

반덤핑 제소절차가 투명화되면 현재 미·EU 등이 제기한 반도체 덤플инг문제로 인한 수출애로가 생길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즉 미국 수출시 현재 평균 3.85%의 반덤핑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EU 수출시 가격인상 합의(Price Undertaking)에 의하여 수출가격을 제약받고 있다.

반덤핑 제소 및 조사가 남발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수출 전략 등 수출환경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되어 수출촉진이 기대된다. 특히 가동초기 비용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초기 개발비용이 막대한 반도체에서는 덤플링판정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허용가능한 대상 보조금을 보다 명시화하여 미·EU 등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보조에 상계관세 제소 및 조사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도 기대되며 원산지 규정이 명료화 되므로 아국산 제품의 수출시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자국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른 수출환경의 불안정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에 대한 개발 의욕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IC 배치설계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무역관세 투자 제한이 완화되면 자유로운 투자환경이 조성되므로 대개도국 투자가 활성화되어 부가가치가 낮은 저급 분야에서의 해외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유지가 가능하다.

반도체 분야는 소자·장비 및 재료분야 전반에 걸쳐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TRIMs에 의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따라 국내에서의 반도체 생산기반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불리한 점은 반도체 소자 및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위한 관세보호조치가 철폐되므로 개발초기부터 외산과 동일한 경쟁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한 비메모리와 장비분야가 우려된다.

현행 기술개발자금 지원은 정부보조금으로서 대부분 제한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술개발지원은 협용되나(기초 : 50%, 응용 : 25% 이내) 상계가 가능하므로 미·EU 등 선진국의 상계관세 조사가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도체 분야는 반덤핑 등 무역규범이 명시화 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환경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되면 수출지향적인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에는 수출호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EU로 부터 반도체 반덤핑제소 및 조사 재발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성이 약해질 것이다.

관세 무세화 등을 통하여 세계 전체적인 교역비용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반도체 수출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UR 타결이 수출호조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반도체 산업은 대응책으로 반도체 칩 보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세계반도체 산업3위국으로서 미국, 일본 등 반도체

UR 타결이 전자산업의 내수에 미치는 영향

구분	변화의 주요 내용	영향 평가	종합
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의 추가적 인하 -무세화 양허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 1999년까지 무관세 ○컴퓨터 입출력기 : 2004년까지 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확대효과는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점진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추가적 인하폭은 미미 ○전자제품 관세율 : 15~20%(1989) → 9~10%(1993) → 8%(1994) 	▽
반덤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조치 조사대상· 이해관계자의 정의· 덴핑마진 산정 등에서 자의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덤핑제도가 전자제품 수입규제수단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아 외국제품의 시장침식효과는 미미할 전망 	-
기술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제도 및 5개 특별법에 의한 수입장벽적 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특별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계량법 -기술기준 제정절차에서의 사전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산업 보호목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많으나, 이의 운용이 억제됨으로써 외국제품의 한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전망 -기술기준 제정시 외국업체의 사전적 참여와 사후적 정보입수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기회 조기포착 가능 	×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가입국으로서 조달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및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외에 건설, 서비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통신협상을 통해 이미 일반통신장비(1992. 1) 및 통신망장비(1993. 1) 개방, 추가적인 개방효과는 미미할 전망 	▽
원산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의 명료성, 예측가능성, 국가간 통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수입규제적 성격은 크지 않았으므로 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무역관련투자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제한 점진적 완화 -국산개발품목 부품수입추천제의 축소 또는 철폐 -국산개발품목 우선구매관행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고유업종, 계열화지정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국산화개발품의 부품수입추천제와 국산화개발품의 우선구매관행의 변화로 국산화 지연 우려 	×
서비스무역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시장 개방 및 개방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N서비스 이미 개방(1994. 1) ○기본통신서비스 개방 : 1998년 이후 -유통시장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단계 유통시장개방(1993. 7) ○완전개방 예시(1996.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서비스업계의 투자확대로 컴퓨터, 통신기기의 수요증가가 예상 	△
지적재산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산권보호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1993. 9) 및 반도체칩보호법 제정 시행(1993. 12)을 통해 보호강화 -UR 타결 후 실질적 보호수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법위 엄격 적용, 위조상품단속 및 처벌규정 강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점진적 철폐와 더불어 일본 유통업체의 본격진출로 국내시장잠식 우려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점진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까지 현재의 50%로 축소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관련품목은 약 40여 개로서 해제시 상당한 시장잠식 예상 	xx

주 : ○○ 매우 유리, ○ 유리, △ 다소 유리, - 중립, ▽ 다소 불리, × 불리, ×× 매우 불리

선진국의 주요 경쟁대상국으로 급 성장하여 국내 관련업계의 보호 필요성과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 치설계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92. 11월 제정하여 '93.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중 우리나라도 이미 서명하여 '95. 7. 1이전에 발효되는 우루파이라운드 지적재산권제도(UR/TRIPs)와 맞지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보호제도를 국제협약 수준으로 향상시켜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하고 국제 통상마찰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야 할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UR/TRIPs 제31조 (f)항을 반영하여 배치설계권자 또는 전용이용권자에 대한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협의 청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법 제31조제1항제2호)

또한 UR/TRIPs 제31조(c)항을 반영하여 통상이용권 설정을 재정 할 시 이용기간도 명시도록 추가해야 할 것이다.(법 제13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UR/TRIPs 제45조를 반영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배치설계권 또는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경감 근거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법 제36조 제4항) 두번째로 반도체 산업 육성대책을 수립(관세 관련) 해야 할 것인데 핵심기술의 조기개발을 위한 집중적 지원강화(무세화 이행 기간 이내 국산화), 관세환급(감

면) 제도 개선 반도체 소자 무세화에 EU 참여 요구 무세화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라. 가전 산업

UR이 가전산업에 전제적으로는 수입보다는 수출을 중대시킬 전망이다. UR로 인해 다소 국내시장의 잠식이 예상되나, 국내 가전은 세계 제2위의 산업국으로 내수보다는 수출비중이 월등히 높으므로 수출 여건의 호전이 더욱 중요하다.

수출은 가전제품의 수출에는 관세인하 또는 무세화, 반덤핑 등의 남용억제 등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의 수출은 반덤핑 규정이 엄격화되어 그동안 미국, EU 등의 반덤핑 제도의 남용으로 우리의 주종수출품(CTV, VCR, 전자레인지, 카라디오 등)이 대부분 겪고 있던 수출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며, 기술시장의 완화 및 정부조달 시장에의 신규참여 등으로 수출환경이 호전되어 다소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개도국으로의 수출은 개설인하, 수출제한조치의 해제로 대폭적인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현행 관세율이 높은(30~50%) 개도국은 관세의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경쟁우위품목인 가전제품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수입은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점진적 철폐, 유통시장의 개방, 저부조달시장 개방 및 기술장애의 철폐 등으로 불리한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 관세 수준이 낮아 관세인하

등에 의한 수입증가는 미미 하나, 수입다변화제도의 점진적 폐지, 유통시장의 개방은 일본 및 일본계 ASEAN 가전제품에 의한 대형 CTV 등의 국내시장 잠식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여 국내 가전제품의 품질향상 등 대책의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가전산업의 대책은 고관세 인하 및 각종 수입제한조치가 철폐되는 동남아 및 중남미 개도국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추진해야 하는데 개도국 국별, 품목별 변화사항을 면밀히 파악, 수출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반덤핑규제 남용 등이 억제될 것이므로 CTV, VCR 등 주종 가전제품 수출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해외 서비스시장 개방을 활용하여 OEM 수출에서 벗어나 해외유통 참여 및 자사 브랜드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점진적 철폐, 유통시장개방에 따라 일본 및 일본계 ASEAN 제품의 국내진출에 대응하여 국내 소비자의 Needs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품질 향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 등 산업 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을 위한 국내시장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대응방안

첫째, UR에서의 통상이슈별 차별적 기회/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전자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출환경으로서 관

세인하(무세화), 미국·EC의 반덤핑조치 등의 남용제한, 개발도상국의 수입제한조치 점진적 완화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며, 내수환경으로서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일본산 전자제품의 유입확대이다. 이러한 기회/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통상전문가와 지역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또한 외국의 통상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수집, 활용을 위한 통상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긴요하며 통상문제에 대한 조직적 사전대응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겨냥한 현지투자를 적극화 해야 할 것이다.

UR협정에 따라 선진국 수출환경도 크게 개선됐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입제한조치의 점진적 해체에 따른 새로운 시장접근기회의 창출, 고관세의 점진적인 인하로 수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갈 것이다. 한편으로 무역관련투자 조치의 폐지로 현지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특히, '80년대말 이래 GATT 제 18조 b항(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조치 인정)에서 출업하고 제11조(수량제한의 금지)국이 된 동남아 및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경우 UR타결 이후 각종 수입제한조치 철폐의 이행이 보다 충실히 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개발도상국 전자시장의 경우 국내업체에 비교우위가 있는 가전제품·보급형 컴퓨터와 통신기기 등이 성장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시장개척이 요망된다.

세째, 해외유통부문의 강화로 자사브랜드의 수출을 적극 추진 해야

할 것이다.

UR이후 예상되는 중요한 변화는 상품무역장벽의 완화와 함께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이다. 이러한 여건 호전은 선진국시장에서는 물론 개발도상국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곧 현재 판매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금융·유통 등 서비스 시장개방을 계기로 해외 현지유통망 및 아프터 서비스망의 구축을 통해 자사브랜드의 수출능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네째, 국제적인 수평분업화 확대가 요구된다.

향후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이 강화될 것임에 따라 전자제품의 무역도 각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원리가 적용되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수평분업이 확대될 것이다. 국내 전자산업도 국제적인 분업화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가전제품·컴퓨터 주변기기·통신단말기·컬러 브라운관 등 국내업체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해외생산기지의 구축을 통한 기업활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내수시장개방에 대응한 유통망과 아프터 서비스망을 재구축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전자산업의 성장과 수익이 기반이 되고 있는 전자 내수분야의 유통망을 보면 제조업체, 즉 공급자중심의 유통망이다. 유통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종소비자중심의 유통망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크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아프터 서비스망의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리점의 자생력의 확보와 복

잡하고 다단계인 유통망의 재정비와 물류체계의 합리화 등 제조업체의 유통망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망의 정보체계 확립(유통 VAN 구축)도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적극적인 기술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품목구조로 변환해야 한다.

UR의 타결로 당분간은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도 수출확대는 가능하겠지만, 소득수준과 함께 인건비의 수준도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현재의 제품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음은 분명한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현재 선진국들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품구조를 변환시켜야만 계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기업간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UR의 타결로 국내시장이 개방되면 자본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선진외국 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막강한 경쟁상대인 선진외국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복과잉 투자는 지양되어야 하며, 기술의 공동개발과 공동보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 본고는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KIEP), UR 협상 결과 및 대응방안(상공자원부), UR 타결이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대우경제(연)) 등에서 부분 발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